

# 醫人 黃子厚 인물 연구

고대원, 김남일, 차웅석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A Study on the Medical Figure Hwang Ja-hu

Dae-Won Ko, Namil Kim, Woongseok Cha

*Dep.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University*

The early Joseon era was a period when various medical systems were established and many medical literatures were published. Hwang Ja-hu(黃子厚) was a civil minister and medical professional who worked hard for maintaining government administrative system and medical regime during the Taejong and Sejong reign. Hwang Ja-hu followed his father and made MiReukWon(彌勒院) prosperous for the homeless people around Chungcheong-do Hoedeok. Hwang Ja-hu was talented in policy development as a government official. He was also learned in medicine, thus always doubled as head of JeonUiGam(典醫監). Hwang Ja-hu reformed the irrationalities in medical regime. He legalized JeonUiGam duties such as the presenting of the medicine or the preparation of the medicine and had the doctors take charge. He also suggested training acupuncture specialists(鍼灸專門醫). Hwang Ja-hu played a leading role in spreading HyangYak(鄉藥) throughout the country and reissuing [HyangYakGuGeupBang(鄉藥救急方)] due to personal philanthropism and service. He tried to defeat illnesses by letting the common people understand the symptoms and use medicine accordingly. Also he intended [HyangYakGuGeupBang(鄉藥救急方)] which was written focused on 'easiness book'(簡易方), 'experience book'(經驗方) to be used for the common people because [HyangYakJipSungBang(鄉藥集成方)] was made up a huge volume and used for training medical professionals and for accumulating knowledge. Hwang Ja-hu pursued subdivision of medical systems and specialization of medicine but also promoted medical rights. We should continue to discover and introduce medical figures who understood medicine and improved the medical systems.

Key words: Hwang Ja-hu(黃子厚), MiReukWon(彌勒院), JeonUiGam(典醫監), HyangYakGuGeupBang(鄉藥救急方)

## I. 서론

최근 한국의사학사의 연구 과제로 인물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역사의 주체로서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에서부터 의사학사의 자리 매김이 가능하다는 대전제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의학 분야의 인물 연구는 허준과 이제마를 비롯하여 극소수의 의학 명인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역사자료와 관련 기록이 매우 희소하여 극히 제한적이다.<sup>1)</sup> 본 논문에서 다루는 황자후(黃子厚)는 조선 전기 태종·세종 연간에 걸쳐서 정치·행정제도와 의료제도 정비에 힘쓴 문신(文臣)이면서 의인(醫人)이다. 그가 활동한

조선 전기는 각종 의료 제도가 마련되고 많은 의서가 간행되던 시기다.

그는 의약에 밝아 항상 전의감(典醫監) 제조(提調)를 겸하였으며 전의감의 개혁에 앞장섰다. 조선 전기의 국가 중앙 의료기구를 살펴볼 때 삼의사(三醫司)의 체제를 보이는 것은 세종대에 이르러 서다. 삼의사는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惠民서(惠民署)로 구성된다. 주로 왕실의 의료를 담당하던 삼의사 중 내의원은 임금에게 올리는 어약(御藥)의 조제를 담당하던 기관으로 초기에는 내약방(內藥

접수 ▶ 2010년 11월 15일 수정 ▶ 2010년 12월 8일 채택 ▶ 2010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차웅석,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4-3190 Fax 02-961-0671 E-mail chawung@khu.ac.kr

1) 근간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주력한 역대의학인물연구와 그 성과로 간행한 『역대의학인물열전1,2』는 의미 있는 의사학적 성과라 할만하다. 또한 본 논문의 완성 후 향약의학과 관련된 인물연구로 『역대의학인물열전3』에 황자후에 관한 내용을 접하여 여기에 덧붙인다.

房) 혹은 약방(藥房)이라 하여 전의감 내에 별도로 속해 있다가 세종 25년(1443) 6월에 내약방을 내의원이라 개칭하여 독립시킨다. 이와 함께 내의원 소속 의원의 선발을 매우 엄격히 하였고 어약의 조제도 6품 이상의 의관(醫官)만이 할 수 있게 하였다.<sup>2)</sup> 즉, 전의감의 개혁에 따른 내의원의 독립과 내의원 소속 의원의 엄격한 선발은 황자후와 같은 인물의 공헌이 있었기에 정착될 수 있었다.

황자후는 일선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을 인쇄하여 각 지방에 배포하도록 건의하였다. 조선 전기는 고려 중기이후 내려오는 향약 의학을 완성하고 많은 구급의서들이 간행된다. 현존하는 한국 最古의 의서인 『향약구급방』은 조선 전기 중 태종 17년(1417), 세종 9년(1427)에 걸쳐 두 번이나 중간되었다. 그 중 태종 17년에 간행된 중간본이 현존하고 있기에 일찍부터 연구가 있어왔고<sup>3)</sup> 그 주변 인물로 황자후가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인물 소개에 그칠 뿐 조선 전기에 일선 지방 행정관들이 『향약구급방』을 주목한 이유와 실제적으로 향약구급서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황자후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인물로 연구된 바가 있다.<sup>4)</sup> 하지만 『향약집성방』의 비판에 앞서 그가 주도한 『향약구급방』의 중간(重刊)에 대한 배경을 연구한 바는 없다. 부족하지만 황자후의 인물 연구에서 그 배경을 찾아보았다. 아울러 황자후의 생애와 미륵원(彌勒院) 봉사를 통한 애민 사상과 함께 행정 관료로서의 업적과 의관으로서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의 의료 정책개발이 가지는 의사학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황자후의 가계

#### 1) 가족관계

황자후(黃子厚)<sup>5)</sup>의 자(字)는 노직(魯直)<sup>6)</sup>이고, 본관은 회덕(懷德)이며, 시호는 혜의(惠懿)이다. 고려 말 공민왕 12년(1363)에 태어나서 조선 초 세종 22년(1440)에 졸하였으며 태종-세종 연간에 걸쳐서 활동한 文臣이면서 醫人이다.

아버지는 고려 공민왕 때에 행수안군사(行遂安郡事)를 지낸 수안공(遂安公) 황수(黃粹)이며, 어머니는 남양홍씨(南陽洪氏)로 참지정사(參知政事)를 지낸 홍복규(洪復圭)의 딸이다.

아버지 황수는 1392년 마침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서 고려의 유신들과 함께 피신하다가 태조 3년 1394년에야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sup>7)</sup> 황수의 사위는 은진인(恩津人) 송명익(宋明諶)로 고려 공민왕 때에 급제하여 안렴사(安廉使), 집단(執端)를 거쳤으나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 가는 것을 보고는 처가가 있는 회덕으로 낙향하였다<sup>8)</sup>. 송명익은 세상에 속칭 ‘회덕 송씨’로 알려진 은진 송씨가 회덕에 거주하게 된 배경이 되는 인물이다.

황자후의 부인은 한성판윤(漢城判尹) 한치현(韓致賢)의 딸로 한양군부인(漢陽郡夫人)이며 고려 말의 학자인 삼은(三隱)의 한사람인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의 외손녀이다.

황자후의 아들 황유(黃裕)는 세종 14년(1432)에 태종의 후궁 김씨의 소생 숙안옹주(淑安翁主)의 부군으로 태종의 부마(附馬)가 된다. 이때가 황유의 나이 12세로 이는 세종과 한성부윤(漢城府尹)으로 있던 황자후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혼사라고 볼 수 있다. 이로써 황자후 집안은 만년에 왕실과 혼인을 맺게 된다.

### 2) 가계도

충청도(忠淸道) 회덕(懷德)을 본관으로 하는 회덕 황씨는 고려말의 문신인 황윤보(黃允寶)를 그 시조로 삼는다.<sup>9)</sup> 황자후는 황윤보의 4世孫이다. 황윤보는 고려 말에 지문성부사(知文成府事)를 거쳐 호부전서(戶部典書)를 지내고 좌명공신(佐命功臣) 회천군(懷川君)에 봉해졌다. 이때부터 회

2) 맹용재 외 15인, 『韓醫學通史』, pp.176-178.

3) 신영일, 『『鄕藥救急方』에 대한 연구(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 이민호 외, 「黃子厚의 『鄕藥集成方』 批判과 그 含意(鮮初의 鄕藥開發 및 對民醫療政策과 관련하여)」

5) 『懷德黃氏大同譜』에 ‘子厚 子一作自 字魯直’라 했다. 실제로 『新增東國輿地勝覽』卷17, 忠淸道, 公州牧, 名宦條와 『懷德邑誌』 人物條에는 黃自厚라고 쓰고 있다.

6) 『世宗實錄』 世宗22年(1440) 8月 21日(庚寅). 황자후 卒記에는 ‘善養’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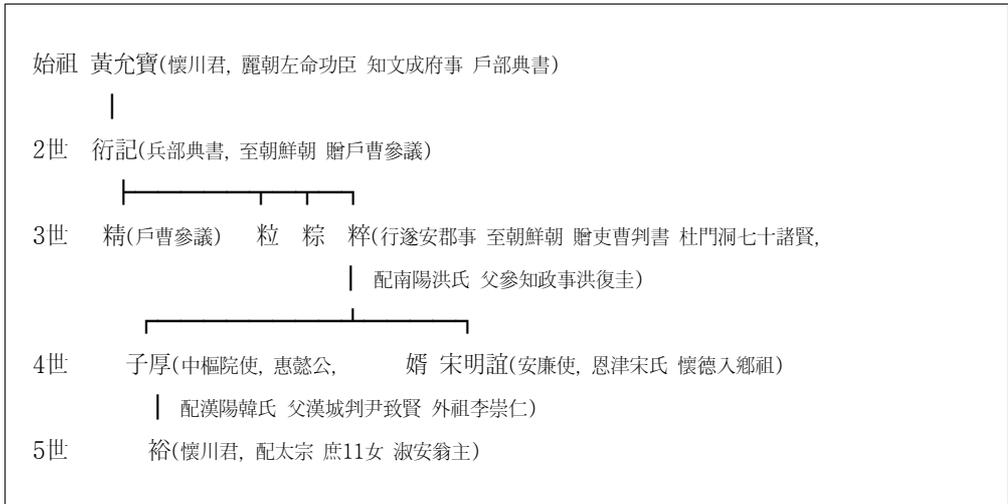
7) 『대전사료총서』 제10집, 대전시사자료집 II, 『태종실록~성종실록』 편, p.108.

8) 『懷德黃氏大同譜』

『懷德邑誌』, 人物條, ‘高麗宋明諶恭愍朝登第官至執端.’

9) 『懷德黃氏大同譜』

<표 1> 황자후의 가계도<sup>10)</sup>



덕현을 본거지로 하는 회덕 황씨가 생겨났다. 그는 공민왕이 후계를 정할 때에 이인임, 임견미 등이 신돈(辛旽)의 아들로 알려진 신우(辛禰)를 추대하고 중론이 이에 부화뇌동하였을 때, 홀로 그 부당함을 역설하여 말하기를, “신우는 미승(迷僧) 신돈의 중인 반야(般若)의 몸에서 출생한 자이다. 어찌 왕씨(王氏)의 조정에 마땅하리오”라 하여 수천인의 상소를 올렸으나 척신들의 저지로 왕에게 주달되지도 못하게 되자, 관직을 버리고 회덕으로 돌아와 조용히 여생을 마쳤다. 이후 이들 회덕 황씨는 회덕을 본관으로 하는 토성(土姓)이 되었다.<sup>11)</sup> 황자후가 살던 조선조 초까지 회덕현의 토착 성씨는 사성(四姓)이 있었다.<sup>12)</sup> 황자후의 가문은 이미 충청도 회덕 지방의 사족(士族)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윤보의 아들 황연기(黃衍記)는 고려조에 가선대부(嘉善大夫) 병부전서(兵部典書)를 역임하였으며 미륵원(彌勒院)을 증건하여 고려 충혜왕2년(1332)부터 고려 충정왕3년(1352)까지 운영하면서 행려자를 후대(厚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소개하겠다.

## 2. 황자후의 생애

### 1) 관료로의 진출

황수는 아들 황자후에게 한양의 처가댁(한판서댁)에 다녀오게 하였는데, 이것이 황자후가 조선의 조정에 출사(出仕)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자후가 한양의 한판서 댁에 머물

때였다. 이때 마침 정안대군(定安大君:후일 태종)이 황자후에 대해 듣고서 그를 세 번이나 불렀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군이 친히 찾아와서 그에게 정치를 물었는데, 이때 황자후는 대답하기를 “백성이 병혁(兵革:전쟁)에 시달리고 있으니 원컨대 싸우는 일을 그치게 하고, 문교(文教)를 닦고 밝혀서 먼저 인륜을 가르쳐 백성을 편안케 하고, 이웃나라와 외교를 하여 변경이 어지럽지 않게 하고, 백성에게 밭 갈고 씨 뿌리는 것을 권장하여 백성이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장구한 방책(方策)일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정안대군이 말하기를 “호시의덕(好是懿德:남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따라서 좋아한다는 뜻)이라 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친거하여 관로(官路)에 들게 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황자후는 태종정권에서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sup>13)</sup> 고려왕조에 벼슬을 했던 황수는 조선왕조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들 황자후는 그러한 의리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새 왕조의 서울로 보내 관계에 진출할 길을 알아보게 했던 것이다.<sup>14)</sup>

이와 같이 황자후는 일찍이 태종의 천거로 벼슬을 시작하여 내직과 외임을 두루 거치게 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황자후는 기우제와 관련 있는

10) 『懷德黃氏大同譜』, 『氏族源流』, 지두환 『태종대왕과 친인척(후궁)』 참조

11) 앞의 책

12)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公州牧, 懷德縣條. ‘土姓四, 黃、任、李、房; 亡姓一, 郭’

13) 『대전사료총서』 제10집, 대전시사자료집II, 『태종실록~성종실록』 편, p.108.

14) 허경진, '미륵원 남루와 이곳을 소재로 지은 글에 대하여', p.351.

인물로 나온다. 기우제는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내리기를 비는 제사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기본으로 삼아왔다. 농업에는 물이 필요하며, 그것은 곧 비를 의미하였다. 특히, 벼농사에는 적절한 강우량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철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 전후에는 가뭄이 계속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따라서 수리시설이 부족했던 옛날일수록 기우제는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조선시대에도 기우제는 잦았다. 왕조실록을 찾아보면 기우제가 음력으로 4월에서 7월 사이의 연중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태종 재위 18년간, 기우제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태종3년(1403년) 한 해뿐이다. 나머지 17년 동안은 해마다 2,3회씩, 태종 16년 한 해 동안에는 9회의 기우제 기록이 보인다.<sup>15)</sup> 황자후와 관련된 기우제에 관한 실록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인녕부 윤(仁寧府尹) 황자후에게 명하여 동남(童男) 30명을 모아 석척기우(蜥蜴祈雨)를 광연루(廣延樓) 아래서 행하게 하였다.<sup>16)</sup>

임금이 인하여 신선(神仙)의 도(道)를 논하여 말하였다. “…… 근자에 내가 비를 근심하기를 심히 하여, 황자후로 하여금 태을초제(太乙醮祭)를 행하게 하였더니, 과연 비를 얻었다.”<sup>17)</sup>

태종은 황자후로 하여금 석척기우(蜥蜴祈雨)와 태을초제(太乙醮祭) 등 기우제를 지내게 하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볼 때 태종이 직접 황자후에게 기우제를 행하게 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황자후는 세종대에는 비를 비는 방법에 대해 직접 건의하기도 하였다.

전 판나주목사(判羅州牧使) 황자후가 아뢰기를, “비를 비는 방법이 비록 많으나 뇌성보화천존(雷聲普化天尊)에게 비는 것이 가장 절실하오니, 도사(道士)를 골라 목욕제게하게 하여 상호군(上護軍) 이진(李堧)을 시켜 소격전(昭格殿)에서 기도드리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18)</sup>

이는 기우제를 지내는 잡다한 방법을 폐하고 이상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에 의해 원종공신(原從功臣)<sup>19)</sup>의 반열에 오른 황자후는 이후에도 많은 총애와 신임을 받고 있음을 『태종실록』 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황자후를 충청도 도관찰사(忠淸道都觀察使)로 삼았다. …… 황자후가 대궐에 나와 사은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지난번에 어미의 병으로 회덕현(懷德縣)에 있었기 때문에 분부(分符)의 명령을 구하였었는데, 지금 어미의 병이 이미 나았고 전하가 오래 편치 못하신데 신이 전의(典醫)를 겸하여 직책이 상약(上藥)에 있으니, 어찌 차마 전하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대

로 따라서 우희열(禹希烈)에게 명하여 그 직책을 그대로 맡게 하였다.<sup>20)</sup>

이는 황자후가 태종15년(1415)에 충청도 도관찰사에 제수 되었으나 전의를 겸하고 있으며 항상 태종의 가까이서 상약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태종의 건강을 염려하여 사양하니 다시 그의 직책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황자후의 충직한 직무와 태종의 총애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황자후의 관직 생활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다. 이듬해에 전의감에서 소합유(蘇合油)의 부정 구입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한다. 전 판원주목사(判原州牧使) 권완(權緩)의 집에 소합유(蘇合油) 3근이 있었는데, 권완과 지신사(知申事) 유사눌(柳思訥)이 공모하여 왜인(倭人) 상호군(上護軍) 평도전(平道全)을 피어서 그 단자(單子)를 받아 승정원에 바치고, 유사눌이 아뢰어 전의감(典醫監)에 내렸는데, 제조(提調) 황자후가, “벌레가 생겨서 쓰지 못하겠다.”하고 받지 않았다. 평도전이 다시 승정원에 바치니, 유사눌이 다시 계문(啓聞)하지 않고 내약방(內藥房)에 수납(收納)하니, 약방대언(藥房代言) 탁신(卓愼)이 이를 받았다. 추후 소합유의 부정 사건이 드러나 이로 말미암아 황자후는 태종의 엄한 질책을 받고 즉시 계문하지 아니한 죄는 본인이 실로 감당하겠다 하여 충청도 회덕으로 부처(付處)되기에 이른다. 杖 80대를 대속(代贖)받고 외방(外方)에 付處된지 2달 만에 풀려나 自願하여 居住하게 된다.<sup>21)</sup>

황자후는 세종대에 한차례 더 고비를 겪는다. 충청도 관찰사 시절에 환상곡을 부정 발급하여 귀양을 가게 되었다. 실록에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자후가 일찍이 충청도 관찰사가 되어 환상곡 15만 1천여 석을 독단하여 발급하고 오히려 현존한 양으로 기록 회계(會計)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적발 탄핵하고, 을이 공장 90대에 도(徒) 2년 반에 해당한다고 계청하니, 명하기를, “외방에 부처하라.”하여, 드디어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4, p.501-502.

16) 『太宗實錄』 太宗15年(1415) 5月 20日(丙辰)

17) 『太宗實錄』 太宗15年(1415) 7月 8日(癸卯)

18) 『世宗實錄』 世宗9年(1427) 6月 11日(戊辰)

19) 『太宗實錄』 太宗16年(1415) 3月 8日(庚子).

이어서 황자후에게 하교(下敎)하였다.“내가 옛 친구의 정으로써 경을 원종 공신(元從功臣)의 반열에 두었으나……” (仍教子厚曰: “予以故舊之情, 置卿于元從之列”).

『世宗實錄』 황자후의 즐거에 나오는 음서로 관직에 나아갔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20) 『太宗實錄』 太宗15年(1415) 7月 13日(戊申)

21) 『太宗實錄』 太宗16年(1416) 3月 8日(庚子), 3月 20日(壬子), 4月 13日(乙亥), 5月 23日(甲寅)

고성으로 귀양 보냈다.<sup>22)</sup>

서성(徐省)이 계하기를, “환상(還上)의 미곡(米穀)은 국가에서 임시로 수효를 정하여 수령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어 나누어 주더라도 넉넉지 못할 것인데, 다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그 공문을 전하여 들린 뒤에 주게 되니, 시기에 미치지 못하여 드디어 농업의 시기를 잃어 기근(飢饉)이 오게 됩니다.”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며 말하기를, “지난번에 감사 성달생(成達生)과 黃自厚가 조정에 보고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더 지급하여 죄를 얻었는데, 만약 일이 급하여 전보(轉報)하고 공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더 준 것은, 내가 장차 용서할 것이다.”하였다.<sup>23)</sup>

사헌부에서 관순이 제 마음대로 환자(還上)를 준 죄를 탄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黃子厚·진준(陳遵)·성달생도 또한 이 일로써 죄를 받았는데, 그 후에 다시 생각하여 보니, 혹시 남양(南陽)·죽산(竹山) 등지의 흉년과 같은 것이 있었다면 급히 구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반드시 전하여 보고한다면 늦어서 일이 제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니, 비록 먼저 나누어 주고 후에 아뢰었다라도 옳을 것이다.”하였다.<sup>24)</sup>

황자후가 충청도 관찰사 시절에 환상곡을 독단으로 부정 발급하고 현존하는 양으로 기록 하여 세종5年(1423) 11월에 탄핵을 받았으나 추후 다시 생각해보니 농업의 시기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행정력을 먼저 미치게 하고 공문과 보고는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세종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황자후는 사리사욕으로 환상곡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역내 민중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진 일이라 짐작된다. 황자후의 애민사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이 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1424年(甲辰) 가을에 사면(赦免)되어 나주목사(羅州牧使)가 된다.<sup>25)</sup>

세종14年(1432)에 황자후의 아들 황유(黃裕)가 태종의 후궁 김씨의 소생 숙안옹주(淑安翁主)의 부군으로 태종의 부마(附馬)가 되면서 왕실과 혼인을 맺게 된다. 이 해 가을에 황자후는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 중추원 부사(中樞院 副使)가 된다. 세종18年(1436)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가 되고 이듬해 중추원사(中樞院使)에 까지 오르게 된다. 노환으로 세종20年(1438) 벼슬에서 물러나기까지<sup>26)</sup> 태종과 세종대에 걸쳐 총애를 받고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자후는 세종 22年(1440) 나이 78세에 졸하였다. 황자후가 죽자 세종은 하루 동안 조회를 파하고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를 내렸으며 또한 혜의공(惠懿公)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실록에 쓰인 졸기(卒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중추원 사 황자후가 졸(卒)하였다. 자(字)는 선양(善養)이며 충정도 회덕현 사람이다. 당초에 음식(蔭職)으로 관직에 보임되어 여러 번 내직과 외임을 지냈고, 계사년 가을에 형조 좌참의로 제수되었는데, 그 해 겨울에 호패법(戶牌法)을 건의하여 마련하였다. 호조 참의로 전임되었다가 개성 유후사 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로 승진되었고, 을미년에 공안부 윤(恭安府尹)으로 전임되어 동전(銅錢)을 사용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청하였다. 병신년에 죄로써 회덕현에 귀양 갔고, 신축년 가을에 좌군 총제(左軍總制)로 임명되었으며, 임인년에는 충청도 도관찰사로 되었다가, 또 죄를 얻어 진주(晉州)에 귀양 갔다. 갑진년 가을에 사면(赦免)되어 나주 목사(羅州牧使)가 되었고, 임자년 가을에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승진, 중추원 부사(中樞院 副使)가 되었다. 정사년 여름에 건의하여 침구(針灸)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業種)을 창설(創設)하였고, 가을에 중추원 사로 승진하였다. 자후(子厚)는 의학(醫藥)에 밝아 항상 전의감(典醫監) 제조(提調)로 있었는데, 무신년 여름에 노병(老病)으로 인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으니 나이 78세이다. 부음이 들리자 하루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를 내렸다. 시호(諡號)를 혜의(惠懿)라 하니, 백성을 사랑하고 주기를 좋아함이 혜(惠)이고, 온유(溫柔)하고 현선(賢善)함이 의(懿)이다. 아들로 황유(黃裕)가 있었다.<sup>27)</sup>

또한 실록에 보이는 어사제문(御賜祭文)은 다음과 같다.

죽은 중추원 사(中樞院使) 황자후에게 제사를 내렸다. 그 제문에 이르기를, “경은 품성이 온량(溫良)하고 조행(操行)이 충직(忠直)하였도다. 이름이 사판(仕版)에 올라 빛난 직질(職秩)을 두루 지냈도다. 다섯 번 고을을 맡았는데 백성이 한 해만 더 있어 주기를 원하였도다. 나가서 한 도(道)를 맡아 사람들이 감당(甘棠) 나무를 사랑하였도다. 송도 유후(松都留後)가 되매 자못 성적(聲績)이 있었고, 약리(藥理)에 정(精)하고 밝아 백성과 나라를 고치기도 하였도다. 추부(樞府)에 승인 되매 내가 좋아함이 나날이 도타왔다. 지난번에 노병(老病)으로 인하여 사직(辭職)을 청하며, 마지못하여 경의 뜻에 따라 길이 복을 누리리라 여겼는데, 하늘이 어찌 남겨 두지 아니하여 문득 둔석(菴窆)으로 돌아가는가. 부음이 들려오니 슬픔이 그지없도다. 조회를 정지하고 명호(名號)를 바꿔서 이에 조홀(弔恤)을 가하노라.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하찮은 제물을 차렸으니, 훈이라도 많이 있거든 이 한 잔을 흠향하라.”<sup>28)</sup>

황자후 졸기에서 시호(諡號) 혜의(惠懿)는 백성을 사랑하고 주기를 좋아함이 혜(惠)이고, 온유(溫柔)하고 현선(賢

22) 『世宗實錄』 世宗5年(1423) 11月 7日(甲申)

23) 『世宗實錄』 世宗9年(1427) 2月 25日(癸未)

24) 『世宗實錄』 世宗18年(1436) 8月 27日(庚寅)

25) 『世宗實錄』 世宗22年(1440) 8月 21日(庚寅). 黃子厚 卒記에는 1424年(甲辰) 가을에 사면되어 나주목사가 되었다고 하나, 『羅州牧邑誌』 宦蹟條에는 1425年(乙巳) 7월4일 到任해서 1426年(丙午) 3월24일 遞任한걸로 나타난다. 『羅州牧邑誌』 宦蹟條 ‘黃子厚洪熙乙巳七月初四日到任丙午三月二十四日遞’

26) 『世宗實錄』 黃子厚 卒記에는 戊申夏로 나오나 戊午(1438年)의 誤記로 보인다.

27) 『世宗實錄』 世宗22年(1440) 8月 21日(庚寅). 黃子厚 卒記

28) 『世宗實錄』 世宗22年(1440) 9月 7日(丙午)

善)함이 의(懿)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는 조정에서 은유하고 현선함이란 중앙관료와 의약에 밝아 전의감 제조로 있으며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충직한 복무를 했음이고, 백성을 사랑하고 주기를 좋아함이란 목민관으로 명성을 쌓고 懷德 黃氏 가문의 가업을 황자후가 충실히 이어 미륵원(彌勒院)을 통한 봉사를 다하고 있었음을 익히 알고 있었음을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회덕 황씨 가문에서 행한 미륵원 봉사를 통해 황자후의 행적을 살펴보겠다.

## 2) 미륵원(彌勒院) 봉사

『회덕황씨대동보』에 실린 「미륵원 해제」·「미륵원 남루기(彌勒院 南樓記) 해제」에 의하면 미륵원은 충청도 회덕현의 동쪽 십산 중에 당시 서울에서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대전직할시 동구 마산동의 서향 산록이다. 일명 굴파원(屈波院)이라고도 하였으며 그 창건연대는 고증할 길이 없으나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미륵원 남루기에 임신년(1332)에 황수의 아버지 황연기가 증언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묘년(1351)까지 20년 동안 미륵원을 경영하며 나그네들을 정성껏 돌봐 주었고, 1352년 7월에 세상을 떠날 때에도 후손들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유언하였다. 황연기의 네 아들 가운데 막내인 황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륵원을 경영하였다. 황연기에게는 정(精), 립(粒), 중(糝), 수(粹)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精은 호조참의를 역임하였고, 粒은 후사가 없었으며, 粹는 지수안군사(知遂安郡事)를 역임하였다. 이 4형제는 30년 동안 미륵원을 확장 운영하였는데, 황수는 수안군사를 역임한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 1380년경에 남루를 세웠다. 목은 이색에게 편지를 보내 「미륵원남루기(彌勒院南樓記)」를 써 달라고 부탁한 것도 그였다.<sup>29)</sup> 『회덕황씨대동보』에 실린 「회덕현 미륵원 남루기」는 다음과 같다.

전 지수안군사 황수가 한산군(韓山君) 목은 이색에게 선친의 덕행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기문을 청탁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일찍 환로를 떠나 항리에서 은거하시면서 임신년(1332)부터 우리고을 동쪽에 있던 미륵원을 중영하여 신묘년(1351)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매년 겨울 시주를 하여 이곳을 지나는 행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혜택을 베풀어 오시다 이듬해(1352년) 7월에 병을 얻어 여러 아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유훈을 순복하여 조금도 내 뜻을 어기지 말고 미륵원을 다시 수리하여 내가 하던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말씀을 마치시고 조용히 서거하시었다. 나의 세분 형님이 선친의 유명을 받들어 이 일을 주선한지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자재와 공구를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재로 마련하여 구옥을 철거하고 새로 원을 건축함에 그

규모나 제도를 타원의 장점을 본받아 더욱 훌륭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여름엔 야채와 겨울엔 탕을 전보다 그 질과 양을 줄이지 않았고 범사를 선친의 유지를 어기지 않으려고 진력하였으나 생각해보니 무더운 여름 날 원을 거쳐 가는 빈객들이 안장을 풀고 쉬어가려 해도 시원하게 쉴 곳이 없으니 이것만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다시 남루를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그러나 이곳에 샘물이 없어 갈증을 시원하게 덜어주지 못해 마음을 기울여 걱정하였는데 꿈에 이인이 나타나 샘물이 날 자리를 가르쳐 주어 파보니 과연 좋은 샘물을 얻게 되었는지라 이는 그 정성에 신령이 감응하여 도력의 징험이 크게 나타남이니 다행히 모든 일을 다 기록하노라. 이 집을 지어 행려 객에게 풍우를 막아주고 누를 세워 더위를 피해 쉬어가게 하고 따뜻한 국으로 좁고 주린 속을 채워주며 신선한 야채로 입맛을 돋우어 주니 이곳을 지나는 많은 행려 객들이 황씨의 은혜를 입은바 크니라. 황씨 일문의 부자 형제가 자비와 효행과 우애와 공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같이 크니 당연히 이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李穡이 영사사(領史事)의 직책을 이어받고 있어 이 미담을 즉시 사록에 전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노라.

洪武40년 2월(1381년, 고려 우왕7년) 삼중대광(三重大匡) 한산군(韓山君) 영예문사(領藝文事) 牧隱 李穡은 쓰다.<sup>30)</sup>

황자후 또한 선친의 유업을 따라 미륵원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확장하면서 덕을 베풀었다. 이는 호정(浩亭) 하륜(河崙)이 쓴 「미륵원 남루제영(彌勒院 南樓題詠)」에 보인다.

내 일찍이 시골로 귀성(歸省)할 제, 회덕현 동쪽 지경을 지나는 데, 산천이 굽이굽이 돌고 초목이 울창한데, 중간에 길이 좁고 또 험하였으며, 길 곁에 우뚝하게 숲 밖으로 솟아 나온 원우(院宇)가 있었다. 내가 이를 바라보고 기뻐하여 말에서 내려 누각으로 올라가 한참 동안 남량(納涼)하면서 계산(溪山)의 승경을 관망하고 시를 써서 남기려 하였으나, 겨울이 없어 그대로 가버렸고 원우의 이름조차도 이미 잊었더니, 이제 전 공주 목사 황자후 군이 우리 牧隱 선생이 지으신 「미륵원 남루기」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 뒤 끝에 발문(跋文) 쓸 것을 청한다. 그 산천의 형세를 들으니, 곧 내가 일찍이 올라 본 바이요, 원우를 세운 경위와 황씨의 부자·형제간의 자애와 우애, 또 남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선생의 기문 가운데 이미 다한 바이다. 이제 그 손자가 또 그 할아버지의 뜻을 본받아서, 그 수리함을 게을리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동서 양쪽에 집을 지어 남녀가 머무르는 곳을 따로 하고는, 다시 진신(搢紳)들 사이에 시를 구하여, 더욱 그 할아버지의 덕의 아름다움을 현양(顯揚)하고자 하니, 그의 뜻이 또한 가상하다.<sup>31)</sup>

29) 허경진, 「미륵원 남루와 이곳을 소재로 지은 글에 대하여」, 『연민학지(6집)』, 연민학회, 1998, pp.350-351

30) 『懷德黃氏大同譜』, 懷德縣 彌勒院 南樓記, p.9-11.

31) 『新增東國輿地勝覽』, 忠清道 懷德縣 驛院條 「彌勒院 題詠序文」 『浩亭集』 卷2, 「彌勒院記」  
余嘗歸寧于鄉道。過懷德縣之東境。山川縈紆。草木蒼蔚。中有路。狹且險。路旁有院宇。巍然出林表。余望而下馬登樓。納涼移時。覽觀溪山之勝。欲留詩未暇而去。院名已忘之矣。今者。前公州牧黃君自厚。以吾牧隱先生所著彌勒院南樓記。來請余題其後。余聞其形勝。則余所嘗登觀者也。院之經營始末與夫黃氏父子兄弟慈愛友恭樂施於人。則先生之記。盡之

이로 미루어 볼 때 황연기가 미륵원을 중건하였고, 아들 황수가 미륵원에다가 남루를 짓고 우물까지 새로 파서 운영하였으며 손자 황자후가 공주목사를 마치고 와서 미륵원을 계속 수리하면서 운영하다가 동서 양쪽으로 집을 지어 남녀가 머무르는 곳을 따로 마련하여 확장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덕현지(懷德縣誌)』에는 미륵원의 주인으로 황자후를 적고 있다.<sup>32)</sup> 황자후 당대에 미륵원이 가장 번창했음이 짐작된다. 고려말 조선초 회덕 황씨 가문의 적선으로 미륵원 객사를 다시 짓고, 누각을 새워 우물을 파고, 남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건물을 넓혀 운영한 것이다. 따라서 미륵원을 통한 봉사에서 목민관으로 칭송 받을 수 있었던 황자후의 자질을 엿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미륵원을 오가는 행려자에게 음식과 잠자리뿐 아니라 구급약을 주고 병자를 치료하는 등 대민구제활동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3) 행정관료로의 활동

황자후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태종 때 음서(蔭敍)로 벼슬길에 나간 이후 내직(內職)과 외임(外任)의 여러 요직을 거쳤다. 외임에 나가 목민관으로서 성주목사(星州牧使), 공주목사(公州牧使), 개성유후사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판나주목사(判羅州牧使)를 역임하였다. 공주목사 시절 벼꾼 선정으로 많은 칭송을 받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명환(名宦)으로 올라있으며<sup>33)</sup>, 개성유후시에 받은 백성의 찬사는 그가 죽고 난후 세종이 내린 제문(祭文)에서도 알 수 있다<sup>34)</sup>. 내직에서는 인녕부사윤(仁寧府司尹), 형조좌참의(刑曹左參議), 호조참의(戶曹參議), 공안부윤(恭安府尹), 한성부윤(漢城府尹),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 중추원사(中樞院使)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책개발과 건의를 한다.

황자후는 태종 13년(1413) 가을에 형조좌참의에 제수된 후 호패법(號牌法)을 건의하여 시행하게 된다. 『태종실록』의 다음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인녕부 사윤(仁寧府司尹) 황자후가 호패(號牌)의 법을 행하도록 청하였다. 上言하기를, “국가에서 비록 재인(才人)이나 화척(禾尺)의 무리들로 하여금 유이(流移)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호패가 있지 않은 까닭으로 이사하는 것이 무상하고 농업을 일삼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비단 이러한 무리뿐만 아니라, 또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 호패를 지급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

앞서 호패를 말하는 자가 또한 많았다. 나 또한 항상 이를 행하고자 하였다. 그 시산(時散) 양부(兩府)와 각사(各司)로 하여금 그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어라.” 정부에서 제군(諸君)·기로(耆老)·문무백관(文武百官)을 모아서 호패의 법을 의논하니, 행할 만하다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쪽을 따라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호패의 법은 지난해에 시행하기를 청하는 자가 많았으나 내가 곧 중지시켰다. 이제 시행하고자 하여 백사(百司)로 하여금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가(可)하다고 하는 자가 많이 있다. 또 호패의 설치는 백성에게 해가 없고 나라에게 유익하며, 또 초법(鈔法)의 시행이 이로 말미암아 쉽게 행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예, 예” 하였다.<sup>35)</sup>

호패법은 조선 초 태조년간부터 논의가 있어왔지만 이때 황자후 등의 건의로 태종 13년 9월(1413)에 호패법을 정하고 10월 1일에 영(令)을 내려 두루 알리고 11일부터 비로소 차례대로 만들어 지급하여 12월 초1일까지 끝마치게 되었다<sup>36)</sup>.

아울러 황자후는 태종15년(1415)에 公安府尹에 전임된 후 동전(銅錢)의 사용을 건의 하였다.<sup>37)</sup>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동전의 발행은 세종 5년(1425)이 되어야 조선시대 최초의 주조화폐인 조선통보가 발행된다. 그러나 황자후의 건의는 선구적인 정책제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공법(貢法)의 제도 개선을 내놓았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태종14년(1414) 8월 18일에 의정부와 육조의 관리들을 불러 조세 운반에 관하여 의논하면서 호조참의 황자후를 경상도에 보내어 살피게 한 후, 바로 윤9월 21일 황자후의 복명(復命)을 받고 태종은 황자후가 살펴 본 바대로 배가 정박하는 곳을 개착할 만하다고 하는 기사<sup>38)</sup>가 나오며, 또한 조말생(趙末生)·황자후 등이 의논하여 이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기사<sup>39)</sup>가 보인다.

이에 관한 사실은 조선후기에 간행된 동전고(東典考)<sup>40)</sup>에

矣。今其孫又能體祖父之意。不惟修治不懈。而又作室于東西。以別男女之所次。且求詩於縉紳間。欲益顯其祖父之德之美。其志亦可尙已。

32) 『懷德縣誌』 人物條

黃自厚官至中樞院事諡惠懿 詳在彌勒院註

33) 『新增東國輿地勝覽』 忠淸道, 公州牧, 名宦條에 황자후의 이름이 올라있다.

34) 『世宗實錄』 世宗22年(1440) 9月 7日(丙午)

35) 『太宗實錄』 太宗13年(1413) 8月 21日(丁卯)

36) 『太宗實錄』 太宗13年(1413) 9月 1日(丁丑)

37) 『世宗實錄』 世宗22年(1440) 8月 21日(庚寅). 黃子厚 卒記

38) 『太宗實錄』 太宗14年(1414) 8月 18日(戊午), 閏9月 21日(辛酉)

39) 『太宗實錄』 太宗12年(1430) 8月 10日(戊寅)

40) 『東典考』 卷7, 租稅篇

戶曹貢法則, 富者之幸, 貧者之不幸, 咸吉平安道既減而又減之, 如有軍旅凶荒無以支當仍舊施行, 三十年下教問中外官吏以貢法踏驗使否,

도 나타난다. 이를 볼 때 그의 탁월한 관료로서의 능력과 정책개발의 재능을 엿볼 수 있다.

#### 4) 醫官으로서의 활동

황자후는 관료로서 정책개발의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약에도 밝았다. 일찍이 태종은 황자후의 재능을 높이 사서 관직에 진출케 한 이후에 항상 전의감 제조를 겸하게 하였다. 황자후가 의약에 밝았던 사실은 『세종실록』에 나타난 그의 즐기와 제문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태종 14년(1414)에 참의 황자후에게 창포주(菖蒲酒)를 만들게 명한 사실에서도 짐작이 되며<sup>41)</sup> 또한 다음에 보이는 태종의 직접적인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윤덕(崔閔德)·황자후가 낙천정에 나아가 하직하는데, 태상왕(태종)이 자후에게 이르기를, “경이 이미 북경에 갔다 온 사람인데, 이제 또 경을 보내는 것은, 경이 약의 이치에 정통하기 때문이다.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약재를 많이 구해 가지고 오라.”하였다.<sup>42)</sup>

이미 종마(種馬) 관압사(觀押司)로 북경에 다녀온 적이 있는 황자후에게 또다시 정조부사(正朝副使)의 책무를 주어 명나라에 가서 조선에서 산출되지 않는 약재를 널리 구하여 돌아오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세종 또한 황자후가 약리에 정밀하고 명확함을 인식하는 기사가 있다.

임금이 한성부 윤(漢城府尹) 황자후에게 이르기를, “고독지술(蠱毒之術)이라는 것이 있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그것의 있고 없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주(陳奏)하였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떻게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가.”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시험 삼아 고독자(蠱毒者)로 하여금 신에게 중독 시키게 하여 실험해 보았습니다.”하니, 임금이 껄껄 웃었다.<sup>43)</sup>

이렇게 약리에 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의감 제조 황자후가 매년 진상약의 조제, 채취에 관하여 각 약재의 약성과 약리에 대한 차이점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전의감 제조 황자후가 상언하기를, 一. 熟地黃蒸作法은, 生地黃을 서리가 오기 전에 풀로 덮어 두었다가, 한두 차례 서리가 온 뒤에 나무못[木釘]으로 깨서, 蘆頭를 떼어 버리고 잔뿌리와 연한 잎사귀는 각각 따로 나누어 두고, 큰 뿌리만을 가려서 깨끗이 씻을 때에, 물속에 잠기는 것이 地黃으로 상품이 되고, 반은 뜨고 반은 잠기는 것이 인황(人黃)으로 그 다음 가며, 수면에 뜨는 것이 天黃으로 또 그 다음이 가는 것인데, 지황을 택하여 햇볕에 말릴 때에, 가는 뿌리와 푸른 잎사귀를 찌뚱어 찌서 즙을 낸 다음에, 이에 지황을 담가 빛이 검기를 기다려서 말린 연후에 돌솥[石鼎]에 버들 시루[柳甌]로 이를 찌니다. 처음에 잠깐 술에 담가 윤기 통하게 하

고, 포대에 넣어서 시루에 안치고는, 그 포대 위에 물에 불린 쌀 10여 알을 놓고, 베로[布] 덮고 찌는데, 한 번 찌서 아직 미숙(未熟)한 것을 일증(一蒸)이라 이르고, 이를 내어 가지고 별에 말리는데, 아직 乾燥하지 않은 것을 일건(一乾)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리게 마련인데, 두 번째부터는 술에 담그지 않고 다만 술을 뿌리기만 하며, 만약에 시루굽이 뾰족하고 짧아서 술물이 끌어 올라서 지황을 다리게 되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법 그대로 해야 합니다. 또 黑豆를 끓여 빛깔을 위장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수법으로 되어 있사오니, 법대로 찌서 만들어야 비로소 가품(佳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외방 의원에서 地黃을 찌서 만든 것은 비록 빛이 검고 윤기가 흐르다 해도, 법에 의해 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一. 종약색(種藥色), 地黃은 白花鹽으로 조작하는 것인데, 7월에 잎사귀를 과다하게 따서 매년 부실하오니, 외방에서 공납(貢納)하는 生地黃은 으레 8월 상순에 예조에 보고하고, 9월에 얼음이 얼기 전에 상납하게 하며, 9월 보름 후에 오는 것은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一. 외방 각 고을에서 공약(貢藥)을 상납할 때에, 약리를 모르는 수령들이 畏惡相反을 가리지 않고 閻茹·閻蘆·草烏頭와 같은 독기가 있는 식물과 냄새가 나쁜 虎骨, 蟲魚 등의 쓸개를 한 상자에 마구 섞어 넣고 있어 매우 타당치 않사오니, 이와 같이 상반되는 독약과 냄새와 기운이 나쁜 총어의 쓸개는 다른 그릇에 감봉(監封)하게 하고, 친히 단자(單子)를 써서 이를 의원 생도(醫院生徒)에게 주어서 상납하게 하소서. 一. 淸心元에 들어가는 蒲黃은 이삭과 함께 온전히 상납하게 하소서. 一. 강원도 영월(寧越)에서 나는 當歸는 서리를 한두 차례 맞은 뒤에, 그 채취를 친히 감독하여 흙을 씻지 말고 그대로 상납하게 하소서. 一. 우봉(牛峯)에서 생산하는 白朮 중에 蘇合元에 넣어 쓸 12근은, 크고 둥근 뿌리를 택하여 去皮하여, 깨끗이 씻지 말고 다만 추한 털만 제거하고 상납하게 하소서. 一. 蒼朮은 썬뜨물에 담가서 쓰는 것도 많고, 담그지 않고 쓰는 것도 또한 많은데 외방 의원의 생도들이 하나같이 빛을 희게 하려고 수없이 물에 담그고, 또 밀가루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신은 원하기를, 각 고을에서 상납하는 원 수량 속에서 반은 去皮해 씻고, 반은 다만 추한 털만을 제거하여 상납하게 하소서. 一. 긴히 쓸 약은 매년 부족하고 긴치 않은 약은 해마다 남아서 머물러 두게 되는데, 민간에서 채취하는 폐단과 쓰이고 안 쓰이는 것이 모두 같사오니, 긴치 않은 약은 수량을 감하고, 긴히 쓸 약은 수량을 더하여, 이를 상정(詳定)하게 하고, 제주(濟州)에서 나는 대모(玳瑁)도 쓰임새가 많지 않사오니, 전에 문안에 등록된 10분의 1로 상정하는 것이 옳습니다.”하니, 곧 예조로 하여금 이를 마련하여 아뢰게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언한 대로 시행하되, 오직 영월 소산의 當歸는 흙만 털고 깨끗이 씻지 말고 상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sup>44)</sup>

이는 숙지황증작법(熟地黃蒸作法)을 자세히 소개하고, 地黃·蒲黃·當歸·蒼朮의 진상 방법과 극독약의 분리를 철저히 하고, 제주산 대모의 진상 수량 조절을 건의한 것이다. 또한 황자후는 약재의 구입을 중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향약의 자급을 역설하고 의원 파견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

三十二年戶曹具貢法, 可否之議, 趙末生黃子厚等以爲可行.

41) 『太宗實錄』 太宗14年(1414) 4月 8日(辛亥)

42) 『世宗實錄』 世宗3年(1421) 10月 7日(丙申)

43) 『世宗實錄』 世宗14年(1432) 1月 16日(丙子)

44) 『世宗實錄』 世宗16年(1434) 1月 30日(戊申)

을 제시하였다.

전의제조 황자후가 上言하기를, “제주에서 나는 영릉향(零陵香)을 건정(乾正)시키는 법이 아마도 미진한 것 같사오니, 비옵건대 7월이 되거든 훌륭한 의원을 파견하여 법에 의하여 건정하면 중국에 구하지 않고도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sup>45)</sup>

이로써 황자후는 세종대에 약재의 진상과 관리는 물론 향약의 발전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황자후와 『향약구급방』 중간

현존하는 한국 最古의 의서인 『향약구급방』의 原刊本은 없고 조선 태종 17년(1417) 7월에 의흥감군(義興監郡) 최자하(崔自河)가 간행한 重刊本이 일본의 宮內廳 圖書寮에 소장되어 있다. 본 논문의 인물 황자후가 세종9년(1427)에 간행한 重刊本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sup>46)</sup> 『향약구급방』의 편제는 書目 및 上·中·下 三卷에 「方中鄉藥目草部」를 가하여 一冊으로 되어 있으며, 跋文만 있고 序文이 없다. 이 중 상권이 18目, 중권이 25目, 하권이 12目を 이루고 있다. 跋文은 조봉대부(朝奉大夫) 안동유학교수관(安東儒學教授官) 윤상(尹祥)의 글로 跋文에, “昔大藏都監, 刊行是書, 歲久板朽, 舊本罕見”이라고 쓰인 것을 볼 때 본서는 고려시대 강화도에 설치한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것이므로 편찬된 시기를 대장도감의 설치기간인 高宗 19年(1232)에서 高宗 38年(1251)사이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sup>47)</sup>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상권은 여러 가지 중독(食毒, 肉毒, 菌毒, 百藥毒, 螫毒)과 목구멍이 막힌 경우(骨鯁, 食噎), 사상(卒死, 自縊死, 理熱喝死, 落水死, 中酒欲死, 斷酒方), 타박 및 쇠로 인한 창상(墮損壓窄傷折打破, 金瘡), 인후·구설·치아의 질환(喉痺, 重舌, 口瘡, 齒衄)을 포함한다.

중권은 피부 질환(丁瘡, 發背癰疽癩, 乳癰, 腸癰, 凍瘡, 惡瘡, 漆瘡, 湯火瘡, 丹毒, 癩疹, 代指瘡, 癰疽, 附骨疽, 癰疥癩瘡, 陰癩陰瘡) 및 화살촉과 창에 찔린 외상(剪鑿木竹籤刺), 대소변을 포함한 복통·설사 질환(痔漏腸風, 心腹痛, 冷熱痢, 大便不通, 小便不通, 淋疾, 消渴, 小便下血), 이목비구의 질환(鼻衄, 眼病, 耳病, 口唇病)을 포함한다.

하권은 부인(婦人雜方) 및 소아질환(小兒雜方, 小兒誤吞諸物) 각각 설정되어 있고 기타 구급 잡병(水腫, 中風, 癲狂, 瘧疾, 頭痛, 雜方)이 있다. 이상은 모두 53目이다. 뒤이어 「服藥法」, 「藥性相反」, 「古傳錄驗方」, 「修合法」이 있고 부록

으로 「方中鄉藥目草部」이 붙어 있다.

각 질환에 대한 처치는 주로 한두 가지의 단방약이 주가 되고 있지만 간혹 서너 가지의 복합처방도 보인다. 약물의 내복·외용과 더불어 침구(鍼灸), 위법(熨法), 목욕법(沐浴法), 점안(點眼), 도인(導引) 등의 처치와 함께 금기, 예방과 치료의 우선을 정하는 대원칙을 말하기도 한다.

황자후가 간행한 重刊本은 실존하는 책이 없어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기사를 미루어 짐작해 보겠다. 황자후의 의약에 관한 행적 중에서 『향약구급방』을 간행할 것을 계하여 충청도에서 重刊되는 장면이 『世宗實錄』에 보인다.

전 판나주목사(判羅州牧使) 황자후가 계하기를, “『향약구급방』을 인쇄하여 외방(外方)에 나누어서 생명을 구제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하니, 드디어 충청도로 보내어 간행하도록 명하였다.<sup>48)</sup>

위의 기사를 볼 때 충청도 회덕현 士族인 황자후가 『향약구급방』의 重刊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황자후가 조정에 『향약구급방』을 인쇄하여 배포하기를 건의한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좋은 예를 『세종실록』에 실린 『향약집성방』 비판의 기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전의감 제조 황자후가 上言하기를, “항상 외방(外方)에 거주하여 감초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사람은 자연히 수(壽)를 하여 8, 90세를 사는데, 서울의 부호는 갑자기 병을 얻으면 약을 많이 써도 결국 효력을 보지 못하니, 이것은 의원이 약을 쓸 줄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니,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오로지 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모·처자가 병에 걸리면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없어 값이 비싼 약을 널리 구하고, 혹은 무당의 무리에게 부탁하여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당약(唐藥)은 먼 시골에서 구하기 어렵고 값이 비싼 물건이므로, 가난한 백성은 도저히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에 전하께서 명하여 찬집한 향약방(『鄉藥集成方』)은 모두 옛 사람의 방문이므로 써도 좋다고 하였으나, 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집성한 향약방(『鄉藥濟生集成方』)은 너무 복잡하고 약이 맞지 않는 것이 많으며, 또 藥毒의 유무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또 大人·小兒·老虛한 병자에 대한 복약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대개 일컫기를 아무 병에는 몇 환(丸), 몇 그릇을 복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옛 사람의 말에, ‘병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사람을 해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참말입니다. 이 향약방(『鄉藥濟生集成方』)은 唐藥을

45) 『世宗實錄』 世宗20年(1438) 5月 21日(甲辰)

46) 신영일,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p.2. 최자하 간행 『향약구급방』 중간본은 신영일의 앞의 경희대 한의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에서 정밀한 복원이 되어 있으며, 원문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웹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47) 신영일, 앞의 책, p.171

48) 『世宗實錄』 世宗9年(1427) 9月 11日(丙申)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방에서 方書를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찬집(『鄉藥集成方』)한 권수가 전(『鄉藥濟生集成方』)보다 갑절이나 많고, 또 老少強弱에 대한 복용량의 많고 적음을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지한 사람들이 만일 박절한 일을 당하면 무슨 약을 써야 옳을지 알지 못할 것이니, 병을 고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는 『百一選方』, 또는 『易簡方』, 혹은 『撮要』, 혹은 『經驗良方』이라 하는 것이 있으니, 신은 이번의 향약방서(『鄉藥集成方』) 안에 제병증론(諸病證論)을 전대로 두어 삭제하지 말고, 경험한 좋은 약을 정밀하게 뽑고 간략하게 모아서, 각각 그 方文 밑에 약의 우리말 이름과 독의 有無, 老少의 복용법 등을 각주(脚註)하여,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쉽게 알게 하면, 약을 맞게 쓰고 병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sup>49)</sup>

황자후는 당약보다는 향약을 쓰는 것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보았지만 『향약집성방』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향약집성방』은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사용되고, 그 효능이 인정되었던 것들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검토가 완전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서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약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약독의 있고 없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대인, 소아, 노약한 병자에 따른 복용의 양을 정하지 않고 단지 어떤 병에는 몇 환, 몇 그릇으로만 한다는 문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건의를 덧붙인다. 이 향약방 안에 제병증론(諸病證論)을 그대로 두고, 경험한 좋은 약을 정밀하게 뽑고 간략하게 모아서, 각각 그 방문 밑에 우리말 약 이름과 독의 유무, 노소의 복용법 등을 실어서, 일반 민중으로 하여금 쉽게 쓸 수 있도록 보완하자고 하였다. 철저히 백성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약리에 밝았고 목민관으로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누대에 걸쳐 후덕(厚德)의 상징인 미륵원 봉사를 실천하였던 황자후로서는 『향약집성방』의 비판이 어찌면 당연한 문제 제기라 여겨진다.

황자후의 생각은 『향약집성방』과 같이 거대한 분량의 책으로 의료인 양성과 지식의 축적보다는 『향약구급방』과 같은 간이방·경험방류의 책으로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추어 증상을 쉽게 파악하고 약을 쓸 수 있게 하여 질병을 물리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향약집성방』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향촌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향약으로 이루어진 구급방이라 여긴듯하다. 이러한 그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한 『향약구급방』 간행과 『향약집성방』 비판은 약과 함께 침구 치료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의술의 전문화 제안에서 살펴볼 것이다.

고려시대 여러 향약의학서들이 간행되었지만 『향약구급방』이 조선 전기에 두 번이나 중간되는 이유는 실용적이면

서도 구급의 의미에 부합되며, 일선 행정 관료는 물론 궁촌 벽지의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 백성의 편에서도 증상을 쉽게 파악하고 약을 쓸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본다. 황자후가 말한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10일후에 『향약집성방』이 완성되었음을 실록에서 알 수 있다.<sup>50)</sup> 이렇게 서둘러 간행한 이유는 차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의료정책 개발과 醫史學적 의의

##### 1) 의료행정의 세분화

행정 관료로서 여러 직책을 수행하고 다양한 정책 개발에 힘썼던 황자후는 오랫동안 전의감 제조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의료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혁하기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의 정책 제안을 실록에서 살펴보겠다.

앞서 전의감제조 황자후가 상언하기를, “매년 진상하는 약을 시기가 임박해서 물어도 모두 모른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무지한 녹관(祿官)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본감에는 포폄(褒貶)이 없고 1년마다 서로 갈마드는 직임이어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지 않은 것이 중시 아무런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을 쓰는 법도 조금도 연구하지 않고 두 번만 녹을 받으면 여러 가지로 칭탁 기피하며, 다만 자기 한 몸의 이익만을 취하여 공에 유익함이 없으며, 약의 조제도 정(精)하지 못할 뿐더러,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이루는 자도 역시 적사오니, 신은 원하옵건대, 진상하는 일과 약을 조제하는 일 등의 모든 일을 각각 별도로 법을 세워서, 의원을 수습(修習)한 자로 하여금 길이 이를 준수하게 하소서. 一. 진상에 관한 일은 서로 미루지 못하게 하고, 6품 이상으로 그 일을 잘 아는 관원에게 전적으로 맡기소서.”<sup>51)</sup>

황자후가 볼 때 전의감의 관리들이 업무 처리에 잘잘못을 묻지도 않고, 1년마다 서로 다른 관직을 맞교대하기에 애써 열심히 일하려고 들지 않으며 약을 쓰는 법[用藥]을 연구하지 않고 복지부동(卜地不動)하여 사리만 앞세워 공익은 버리니 약을 조제하는 일[製藥]도 정미롭지 못하며 의원으로서의 전문 지식도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이에 전의감 개혁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즉, 진상하는 일[進上]과 약을 조제하는 일[製藥] 등 제반 일을 각각 별도로 법을 세워서[各別立法] 의원을 수

49) 『世宗實錄』 卷60, 世宗15年(1433) 6月 1日(壬午). 한국고전번역원의 해석은 오역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역대 의학인물열전3』 황자후편(p.211)을 참조하였다.

50) 『世宗實錄』 世宗15年(1433) 6月 11日(壬辰)

51) 『世宗實錄』 世宗16年(1434) 1月 30日(戊申)

습한 자는 오랜 동안 그 직책을 준수하게 하고 진상에 관한 일을 서로 미루고 못 하게 6품 이상으로 그 일을 잘 하는 관원에게 전담하도록 하게 했다. 이러한 황자후의 정책 제안은 당대에 결실을 보게 된다.

내약방(內藥房) 혹은 약방(藥房)이라 하여 전의감(典醫監) 내에 별도로 속해 있다가 세종25년(1443년) 6월에 내약방을 내의원(內醫院)이라 개칭하고 정원 16인을 두어 독립시키게 된다.<sup>52)</sup> 조선 전기의 국가 중앙 의료기구를 살펴볼 때 세종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삼의사(三醫司)의 체제를 보이게 된다. 삼의사는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로 구성된다. 내의원은 임금에게 올리는 어약의 조제와 궁중은 물론 종친 및 2품 이상 고관의 치료와 제약(製藥)을 담당하게 된다. 전의감 개혁에 따른 내의원의 독립과 내의원 소속 의원의 엄격한 선발은 황자후와 같은 인물의 공헌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의술의 전문화

황자후의 이런 전의감 업무의 세분화는 의술의 전문화에까지 확장된다. 앞서 실록에서 살펴본 황자후의 『향약집성방』 비판에 뒤이어 제시하는 대안이다.

“또 병을 속히 고치는 데는 침과 뜸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의원으로서 침놓고 뜸뜨는 혈을 밝게 알면, 한 푼의 약도 쓰지 않고 모든 병을 고칠 것이니, 지금부터 중국의 의술을 익히는 법에 의하여 각각 전문(專門)을 세우고 주종소(鑄鍾所)로 하여금 동인(銅人)을 만들게 하여, 점혈법(點穴法)에 의하여 재주를 시험하면, 의원을 취재(取才)하는 법이 또한 확실할 것입니다.”<sup>53)</sup>

이는 각 전문법을 두어 이에 따른 鍼灸專門醫를 양성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니 동인(銅人)<sup>54)</sup>을 주조하여 점혈(點穴)의 법에 따라 익혀 의사 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일선 의료 시술에 있어 약과 침구치료는 상호 보완적일 수밖에 없다. 이로써 대민의료사업에 있어서 향약의 보급과 함께 침구치료의 효용성을 제도로써 확립하고자하는 황자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즉, 의술을 익히는 법에 의거하여 각 분과를 두어[各立專門] 의학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향후 조선 중후기 침구의학의 발달을 이끄는 제도적 개혁임에 분명하다. 당장 세종대에 그 결과가 나타난다. 세종24년(1438)부터 침구전문의를 매년 3인씩 삼의사(三醫司)에 각각 1인을 서용(敍用)케 하고 있다.<sup>55)</sup> 이후 이 제도의 완

전한 정착은 성종3년(1472)에 침구전문법을 다시 별도로 설치함으로써 확정되었다.<sup>56)</sup>

## 3) 의권 신장

이어서 황자후는 의료 행정의 세분화, 의술의 전문화와 함께 의원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였다.

“전조(前朝) 때에는 의원 수가 적어서, 병자가 있는 집에서 반드시 말을 보내어 맞이하였는데, 지금은 환자의 집에서 모두 말을 보내지 아니하고 예사로 집에 가서 역지로 가자고 독촉하므로, 종과 말이 없는 전직 의원은 비나 눈에 옷을 적시며 걸어서 병가(病家)를 찾아가게 되니, 이 때문에 본래 어진 마음이 없는 무리들은 먼저 성을 내어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친과 양부(兩府) 이외의 여러 곳의 병을 볼 때에는 병가에서 말을 보내어 의원을 청하는 것이 어더럽니까.”하니, 예조에서 심의하여 아뢰도록 하였다.<sup>57)</sup>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의원의 수가 많아지고,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의원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으며 이는 실례로 태종 때에 의원의 직급이 낮아지고 있음을 봐도 알 수 있다.<sup>58)</sup> 이러한 비판을 볼 때 황자후는 의료 행정의 세분화, 의술의 전문화를 꾀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의원의 직분을 살리는 의권 신장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2) 『世宗實錄』 世宗25年(1443) 6月 15日(戊戌)

53) 『世宗實錄』 世宗15年(1433) 6月 1日(壬午)

54) 태종15년(1415)에 요청에 의해 명나라에서 針灸銅人 仰·伏 2軸을 채색으로 그려진 銅人圖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다. 『太宗實錄』 太宗15年(1415) 4月 22日(己丑)/10月 23日(丁亥) 참조

55) 『世宗實錄』 世宗20年(1438) 3月 16日(庚子)

56) 『成宗實錄』 成宗3年(1472) 3月 14日(庚戌) 醫學勸勵 十條 中에서 여섯 번째로 一, 別設鍼灸專門.

57) 『世宗實錄』 世宗15年(1433) 6月 1日(壬午)

58) 태조1년(1392) 7월 28일(丁未)에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할 때, '전의감(典醫監)은 진시(診視)와 화제(和劑)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判事) 2명 정3품이고, 감(監) 2명 종3품이고, 소감(少監) 2명 종4품이고, 승(丞) 2명, 겸승(兼丞) 2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2명 종6품이고, 직장(直長) 2명 종7품이고, 박사(博士) 2명 종8품이고, 검약(檢藥) 4명 정9품이고, 조교(助教) 2명 종9품이다. 이상의 시(寺)와 감(監)의 영사(令史)는 모두 봉상시(奉常寺)의 예(例)에 의거하게 한다.'로 했으나 태종14년(1414) 1월 18일(癸巳)에 관제를 개정하면서 '전의감(典醫監) 종3품 감(監)을 정(正)이라 칭하고, 4품 소감(少監)을 부정(副正)이라 칭하고, 5품 감승(監丞)을 판관(判官)이라 칭하였다. 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 승(丞)을 모두 부승(副丞)이라 칭하였다. 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 주부(注簿)와 대비원(大悲院) 부사(副使)를 모두 녹사(錄事)라 칭하고, 혜민국(惠民局)·제생원(濟生院)·대비원(大悲院) 녹사(錄事)를 모두 부록사(副錄事)라 칭하였다.' 하였는데, 그 직위가 태종 때에 이르러 한 계단씩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Ⅲ. 결론

황자후는 고려 말 공민왕12년(1363)에 태어나서 조선 초 세종22년(1440)에卒하였으며 태종·세종 연간에 걸쳐서 활동한 文臣이면서 醫人이다. 황자후는 선친의 유업을 따라 공주목사를 마치고 와서 미륵원을 수리하면서 운영하다가 동서 양쪽으로 집을 지어 남녀가 머무르는 곳을 따로 마련하여 확장 운영하면서 미륵원을 가장 번창시켰다. 이를 통한 봉사에서 목민관으로 칭송 받을 수 있었던 황자후의 자질을 엿볼 수 있고, 한편 미륵원을 오가는 행려자에게 음식과 잠자리뿐 아니라 구급약을 주고 병자를 치료하는 등 대민구제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황자후는 일찍이 태종의 천거로 벼슬을 시작하여 내직과 외임을 두루 거치게 된다. 외임에 나가 목민관으로서 성주목사(星州牧使), 공주목사(公州牧使), 개성유후사부유후(開城留後司副留後),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 판나주목사(判羅州牧使)를 역임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많은 칭송을 받았다. 內職에서는 인녕부사윤(仁寧府司尹), 형조좌참의(刑曹左參議), 호조참의(戶曹參議), 공안부윤(恭安府尹), 한성부윤(漢城府尹),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 중추원사(中樞院使)를 거치면서 호패법을 건의하여 시행하였으며, 동전의 사용, 공법의 제도 개선을 건의 하였다. 이를 볼 때 그의 관료로서의 능력과 정책 개발의 재능을 엿볼 수 있다.

황자후는 관료로서 정책개발의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약에도 밝아 항상 전의감 제조를 겸하게 하였다. 명나라에 가서 조선에서 산출되지 않는 약재를 구하여 왔으며 약리에 밝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進上藥의 조제, 채취에 관하여 각 약재의 약성과 약리에 대한 차이점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또한 약재의 구입을 중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향약의 자급을 역설하고 의원 파견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황자후는 향약의 보급과 함께 그의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향약구급방』의 중간을 주도적으로 행하였다. 『향약집성방』과 같이 거대한 분량의 책으로 의료인 양성과 지식의 축적보다는 『향약구급방』과 같은 간이방·경험방류의 책으로 의학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추어 증상을 쉽게 파악하고 약을 쓸 수 있게 하여 질병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황자후는 의료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를 개혁하였다. 즉,

진상하는 일[進上]과 약을 조제하는 일[製藥] 등 제반 일을 각각 별도로 법을 세워서[各別立法] 의원에게 전담하도록 하게 했다. 황자후의 이런 전의감 업무의 세분화는 의술의 전문화에까지 확장된다. 각 전문법을 두어 이에 따른 鍼灸專門醫를 양성할 것과 銅人을 주조하여 點穴의 법에 따라 익혀 의사국가고시를 실시하는 법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대민의료사업에 있어서 향약의 보급과 함께 침구치료의 효용성을 제도로써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의술을 익히는 법에 의거하여 각 분과를 두어[各立專門] 의학의 발달을 도모하고 있어 향후 조선 중후기 침구의학의 발달의 토대를 마련했다. 황자후는 의료 행정의 세분화, 의술의 전문화를 꾀하면서도 자신이 속한 의원의 직분을 살리는 의권 신장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의술을 이해하면서 의료행정을 개선하는 의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해야 될 것이다. 또한 황자후의 예처럼 한의학이 행정적인 면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의료관련 기관들의 인력 편중 현상은 전문인의 균형 있는 선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懷德黃氏大同譜』, 희덕황씨대동보편찬위원회, 1994.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 맹용재 외 15인,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4.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대전시사자료집Ⅱ(태종실록~성종실록편)』, 대전시료총서(제10집), 대전광역시, 2007.
5. 허경진, 「미륵원 남루와 이곳을 소재로 지은 글에 대하여」, 『연민학지(6집)』, 연민학회, 1998.
6. 이민호, 하정용, 박상영, 안상영, 안상우, 「黃子厚의 『鄉藥集成方』 批判과 그 含意(鮮初의 鄉藥 開發 및 對民醫療政策과 關連하여)」,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통권23호)』, 2008.
7. 신영일,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8. 『역대의학인물열전1,2,3』,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2008·2009.
9. 『氏族源流』, 보경문화사, 1991.

10. 지두환, 『태종대왕과 친인척(후궁편)』, 역사문화, 2008.
11. 『太宗實錄』
12. 『世宗實錄』
13. 『成宗實錄』
14. 『世宗實錄·地理誌』
15. 『新增東國輿地勝覽』
16. 『浩亭集』
17. 『懷德縣誌』
18. 『懷德邑誌』
19. 『羅州牧邑誌』
20. 『東典考』
21. 한국고전번역원 <http://www.itkc.or.kr/>
22.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2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
2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지식자원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2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